**비밀유지계약서 (NDA)**

본 비밀유지계약서(이하 "본 계약")는 **㈜비에스지 파트너스**(이하 "갑")와 **주식회사 ABC**(이하 "을")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체결한다.

다 음

**제1조 (계약의 목적)**

본 계약은 **갑**과 **을**이 『**{업무 요지 기재}**(이하 "본 업무")』와 관련하여 각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제공하는 비밀정보를 비밀로 유지하고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 (비밀정보의 정의)**

① "비밀정보"라 함은 본 계약의 체결 또는 본 업무 수행 과정에서 당사자가 알게 된 상대방의 모든 기술적, 경영상 정보 및 이를 기초로 새롭게 발생한 기술적, 경영상 정보를 의미한다.

② 비밀정보는 서면, 구두, 도면, 설계, 실험 결과, 데이터, 프로그램, 거래 내역 등 모든 형태의 정보를 포함하며, 물리적 자료나 장비 또한 비밀정보에 포함된다.

**제3조 (비밀의 표시)**

①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비밀정보를 서면으로 제공할 경우, 해당 서면에 "비밀", "대외비" 등의 표시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.

② 구두 또는 시각적으로 제공된 정보는 비밀임을 즉시 고지하고, 제공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서면으로 비밀정보임을 상대방에게 통보해야 한다.

**제4조 (정보의 사용용도 및 정보취급자 제한)**

① 각 당사자는 비밀정보를 본 업무 수행 또는 그와 관련된 계약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.

② 제3자에게 비밀정보를 제공하려면 상대방의 사전 서면 동의를 얻고, 제3자와 별도의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한 후에 제공해야 한다.

③ 비밀정보는 본 업무 수행과 관련된 자에 한해 접근을 허용하며, 해당 자들에게 비밀유지 의무를 알리고 준수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.

**제5조 (비밀유지의무)**

① 당사자는 상대방의 사전 서면 승인 없이 본 계약 체결 사실, 내용, 본 업무 등을 제3자에게 공개하거나 공표할 수 없다. 다만, 아래 각 호의 정보는 비밀유지의무에서 제외된다.

1. 공개 이전에 이미 공지된 정보
2. 비밀정보 제공자의 고의나 과실 없이 공지가 된 정보
3. 제3자로부터 적법하게 제공받은 정보
4. 독자적으로 개발된 정보
5. 비밀로 고지되지 않거나, 서면으로 통보되지 않은 정보
6. 법원 또는 공공기관에 의해 공개가 요구되는 정보

② 법원이나 공공기관의 요청으로 비밀정보를 공개해야 할 경우, 상대방에게 사전 통지하고 보호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.

**제6조 (자료의 반환)**

① 비밀정보가 포함된 자료는 상대방의 요청 시 즉시 반환하거나, 상대방의 요청에 따라 폐기한 후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공해야 한다.

② 반환 또는 폐기 시 발생하는 비용은 각 당사자가 균등하게 부담하며, 비용을 선지출한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정산을 요구할 수 있다.

**제7조 (권리의 부존재)**

① 비밀정보에 관한 권리는 이를 제공한 당사자에게 있으며, 본 계약은 상대방에게 해당 정보에 대한 사용권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다.

② 본 계약은 향후 어떠한 계약 체결을 암시하거나 강제하지 않는다.

③ 제공자는 비밀정보를 적법하게 제공할 자격이 있음을 보증한다.

④ 각 당사자는 상대방의 시설을 방문하거나 이용할 경우, 그 규정과 지시를 준수해야 한다.

**제8조 (계약기간)**

① 본 계약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3년간 효력을 가진다.

② 본 계약의 종료 후에도 제4조, 제5조 및 제7조의 의무는 지속적으로 유효하다.

**제9조 (손해배상)**

본 계약을 위반한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.

**제10조 (권리의무의 양도 및 계약의 변경)**

① 당사자는 상대방의 서면 동의 없이 본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.

② 본 계약의 수정이나 변경은 양 당사자의 서면 합의에 의해서만 가능하다.

**제11조 (계약의 분리가능성)**

본 계약의 일부 조항이 법적으로 무효가 되더라도, 나머지 조항의 유효성은 영향을 받지 않는다.

**제12조 (분쟁의 해결)**

① 본 계약에 따른 분쟁은 당사자 간 협의를 통해 해결하며,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**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**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.

② 조정에도 불구하고 분쟁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, **갑의 주소지 관할 법원**을 제1심 관할 법원으로 한다.

본 계약의 성립을 증명하기 위해 본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각 당사자가 서명한 후 각자 1부씩 보관한다.

20\_\_\_\_년 \_\_\_\_월 \_\_\_\_일

㈜BSG 파트너스

대표이사: \_\_\_\_\_\_\_\_\_\_\_

서명: \_\_\_\_\_\_\_\_\_\_\_

주식회사 ABC

대표: \_\_\_\_\_\_\_\_\_\_\_

서명: \_\_\_\_\_\_\_\_\_\_\_